

1930년대 각도의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요구 절차 및 문서형식

김명선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Procedure and Document Format for Requesting Constru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by each Province in the 1930s

Myungsun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 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각도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도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조'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도 받아야 했다. 이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도가 거친 행정절차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를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행정절차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14년과 1927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중에서 군청사의 신축을 요구한 전반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 행정절차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이 요구는 어떠한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사용된 공문서 양식은 무엇인지, 근거로 삼은 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의 전반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1930년대 생산된 세출계획서를 포함하는 회계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이다.

Abstra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the Choson Governor-General was a kind of state organ. At that time, for a local administrative office to be built, each province('Do') had to go through a certai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be approved by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hoson Governor-General in the name of "state assistance" because the financial conditions of each province were not sufficient. To obtain this approval and financial suppor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as divided into the first half, where each province requested the construction of a local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second half, where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approved it and supported it financially. There are studies on the first half procedure in 1914 and 1927, which were limited to the new construction of county('Goon') offices among several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This study analyzed the first half of the construction of all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in the 1930s.

Keywords : Local Administrative Office, Document of Construction Plan, Document of Tax Expenditure Plan, Administrative Procedure, Document Format, Accounting Rule of the Choson Governor-General

*Corresponding Author : Myungsun Kim(Sunmoon Univ.)

email: rosaria@sunmoon.ac.kr

Received March 4, 2021

Revised March 31, 2021

Accepted June 4,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일제강점기 도(道)·부(府)·도(島)·군(郡)의 청사, 즉 지방행정관청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 배치·평면·공간구성, 증·개축을 통한 평면변화, 입면·형태 등 주로 건축적 특징에 집중되었다[1-7]. 반면 건축을 위해 사전에 진행된 행정절차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1914년 3월 1일 단행된 군폐합(郡廢合) 과정에서 군청사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건물 전용(轉用)을 우선하여 건축예산을 절감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방침과 행정절차를 밝힌 연구[8]와 1927년 봄, 각도(各道)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제출한 차년도(1928) 세출계획서에 나타난 각도 관할 군청사의 신축요구 및 신축계획안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9]. 이들은 군청사만 연구대상으로 삼거나 연구시기를 1914년이나 1927년 한 해에 국한시킨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는 1930년대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요구를 담아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공문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건축요구가 어떤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그 절차에 사용된 문서형식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절차의 근거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요구하는 회계행정의 윤곽을 그릴 수 있고, 1927년 각도가 생산한 차년도 세출계획서가 어떠한 행정절차·문서형식·근거규정에 따랐는지 소급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을 택한다. 기본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는 1930년대(1930, 1935, 1936, 1937, 1938) 각도가 작성한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을 담은 건(件)(각각 그 이듬해에 첩(綴)되었음)과 『조선총독부 관보』에 등장하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所屬官署, 각도는 소속관서의 하나) 사무분장과 공문서 규정이다.

2. 각도의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서

2.1 각도의 차년도 공사계획서 작성 및 보고

공문서철 『지방청예산요구서철(地方廳豫算要求書類)』(1931,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번호 CJA0002793, 이하 한번 나온 철명은 생략하고 관리번호만 표기)[10]에는 1930년 5월 7일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소속 회계과장이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소화6년도 영선공사계획에 관한 건(昭和六年度營繕工事計劃に關する件)」이 묶여 있다(Fig. 1). 또 다른 공문서철 『세입출계획서류(稅入出計劃書類)』

(193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231)[11]에는 1935년 5월 1일 회계과장이 내무국장에게 보낸 「소화11년도 영선공사계획에 관한 건-회계과장(昭和十一年度營繕工事計劃に關する件-會計課長)」이 있고, 공문서철 『소화12년도세출계획(昭和十二年度稅出計劃)』(1937, CJA0003303)[12]에는 1936년 5월 4일 역시 회계과장이 내무국장에게 보낸 「소화12년도 영선공사계획에 관한 건-회계과장(昭和十二年度營繕工事計劃二關スル件-會計課長)」이 있다. 편의상 각 건을 가), 나), 다)로 칭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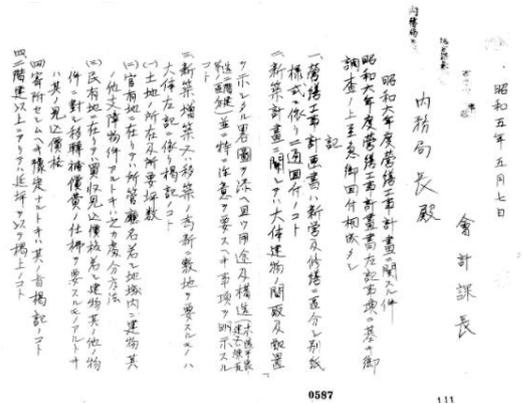


Fig. 1. Documents on the construction plan for the Soхва 12 year

source: [10]

가), 나) 다)는 각각 그 해 5월 초~중순에 회계과장이 내무국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생산시기·발송주체·접수대상이 같다.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내용도 같아서,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을 작성하는 요령과 '하년도영선공사계획서(何年度營繕工事計劃書)'라는 제목의 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나), 다)는 회계과가 작성한 일종의 문서형식, 즉 서식(書式)이었다. 1937년과 1938년 생산된 건들을 묶은 공문서철 『지방청예산요구서(地方廳豫算要求書)』(1938, CJACJA0003329)[13] 및 『각도세입세출계획서(各道稅入稅出計劃書)』(1939, CJA0003471)[14]에는 이 서식이 빠져 있다(Table 1).

가), 나), 다)가 묶인 각 철의 모든 건을 생산 날짜별로 살펴보면 이 세 건의 성격을 가능할 수 있다. 1931년 철(CJA0002793)[10]에 묶인 건들을 사례 삼아 기안날짜·발송주체·발송대상을 단계를 두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단계] 1930.5.7. 회계과장->내무국장
- 2단계] 1930.5.12. 내무국장->각도지사(各道知事)
- 3단계] 1930.5.20.~6.25. 각도지사->내무국장
- 4단계] 1930.7.4. 내무국장->재무국장

Table 1. The date of document drafting for at each steps in 1930s

	CJA0002793(1931)	CJA0003231(1936) CJA0003139(1936)*[15]	CJA0003303(1937) CJA0003304(1937)*[16]	CJA0003329(1938)	CJA0003471(1939)
step 1	1930.5.7	1936.5.1	1936.5.4	-	-
step 2	1930.5.12	-	-	-	-
step 3	1930.5.20.~1930.6.25	1935.5.24.~1935.6.14.**	1936. 5.22~1936.7.2	1937.5.28.~7.24	1938.5.23.~1938.7.18
step 4	1930.7.4.	1935.7.5	1936.7.22	-	-

* The documents produced in 1935 and 1936 are grouped in two document folders.

** The document by Jeonbuk only shows the year(1935) [13]and month(May) without the date.

1단계에서 1930년 5월 7일 회계과장은 내무국장에게 각도로부터 보고받을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서 작성방식을 정리한 서식을 보냈고, 2단계에서 내무국장은 5일 후인 그달 12일 이 서식을 첨부하여 각도지사에게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통첩(通牒)했고, 3단계에서 각도지사는 5월 20일~6월 25일에 걸쳐 내무국장에게 보고했고, 4단계에서 내무국장은 이를 수합하고 의견을 달아 7월 4일 재무국장에게 교부한다. 공문서 기안 날짜(가) 1930.5.7, 나) 1935.5.1., 다) 1936.5.4.)를 고려하면, 가), 나), 다)는 모두 1단계에서 회계과장이 내무국장에게 보낸 것이다.

각 철에는 3단계에서 각도가 이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한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서도 묶여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별도 건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각도가 작성한 이듬해 세출계획서의 일부였다. 이들 세출계획서에는 건축공사계획서 외에도 일반 경비, 여비, 고용원 급여, 숙소 비용, 피복비, 잡비 등의 계획서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세금지출이 필요한 항목이다.

각도는 이듬해 세출계획서를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매년 제출했으므로, 건축공사계획서 역시 매년 제출된 셈이다. 그런데 1930년대 공문서철로는 5개년도(1930, 1935, 1936, 1937, 1938) 것만 국가기록원에 남았고, 그나마 1937년 생산 건을 묶은 공문서철과[13] 1938년 생산된 건을 묶은 공문서철[14]에는 3단계에서 각도가 내무국에 제출한 이듬해 세출계획서만 들어 있다(Table 1).

2.2 작성 및 보고의 근거 규정

1930년 생산된 가)가 묶인 철(CJA0002793)에는 내무국장이 1930년 5월 7일 작성하여 각도지사에게 ‘참조’용으로 보낸 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회계사무장정 초(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會計事務章程抄)」이다(Fig. 2)[10].



Fig. 2. Summary transcription of the rule for the accounting affairs of the Choson Governor-General and affiliated offices

source: [10]

이 초(抄)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회계사무장정」(이하 「회계사무장정」으로 약칭)의 제25조 및 제26조 중에서 각도가 제출할 이듬해 세출계획서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수기로 적은 것이다. 인용하면,

“제25조. 좌기(左記) 구분에 따라 당해 각관(各官)은 차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 및 이에 따르는 수지(收支)를 설명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있으면 그 사유 및 계산근거를 밝힌 조서(調書)를 첨부하여 (중략) 5월 31일까지 (중략) 각 2통을 본부(本府)에 제출해야 한다.

1 도·부·군·도·경찰서 및 도자혜의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

제26조. 전조(前條)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1호 중 도·부·군·도의 세출 (중략) 에 관한 것은 내무국장이 (중략) 정리하고 의견을 붙여 6월 30일까지 재무국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굵은 글자는 강조를 위해 필자가 처리)

본 연구의 관점에서 위 인용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ㄱ) 도·부·군·도의 이듬해 세출계획서에 포함되는 각 청사의 건축계획 보고는 도지사의 의무라는 점, ㄴ) 이 세출계획서는 매년 5월 말까지 내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 ㄷ) 내무국장은 이를 취합·정리하고 의견을 달아 매년 6월 말까지 재무국장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계사무장정」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회계사무처리 규정인데, 1914년 8월 17일 조선총독부훈령 제42호로 처음 정해졌다[17]. 이후 이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는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보고의무가 도지사에게 있다는 내용과 4단계로 본 연구가 정리한 절차는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1930년대 각도의 건축공사계획서 작성·보고는 1914년 제정 당시의 「회계사무장정」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28년 7월 21일 개정에서 각 단계의 “제출기한은 시의(時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7조의2가 추가되어서[18], 1930년대 공문서 제출기한은 그해 사정에 맞추어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2.1의 Table 1에서 정리한 대로, 내무국장은 이를 감안하여 각도에 건축공사계획서를 포함한 세출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지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한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2단계(1930.5.12.)에서 내무국장은 각도 지사에게 「소화6년도 세출계획서에 관한 건-내무국장(昭和六年度稅出計劃書ニ關スル件-內務局長)」을 보내, 늦게 제출하려는 “도(道)가 왕왕(往往) 있어서 업무 처리상 지장을 초래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기한 엄수하여 속히 세출계획서를 제출하라”면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으면 변경요구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건을 추가로 보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서 각도의 보고는 5월 말 기한을 한참 넘겨 6월 25일까지 이어졌다. Table 1에서 보듯이, 1937년과 1938년 3단계 제출은 아예 그해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그 여파로 4단계에서 내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이를 정리해 교부할 기한도 지켜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각도의 보고가 기한을 넘긴 것은 건축 뿐 아니라 급여와 경비 등을 정리하기에는 기한이 짧았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

3. 건축공사계획서 보고예의 구성 및 내용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예산보고, 세입보고, 세출보고처럼 매년 보고되는 공문서를 ‘연보(年報)’라고 하고, 이 연보는 조선총독부가 정한 ‘보고예(報告例)’라는 서식을 사용해서 작성되어야 했다[19]. 따라서 가), 나), 다)는

각도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요구를 내무국에 보고하는 서식인 보고예에 해당한다. 1929년 11월 8일 개정된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程)」에 따라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이 ‘영선에 관한 사항’과 ‘지방영선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었으므로[20] 비단 각도 뿐 아니라 여타의 조선총독부 내국이나 소속관서도 이 보고예를 활용하여 건축공사계획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3.1 보고예의 전·후반부 구성

가), 나), 다)는 간단한 전·후반부 구성을 취한다. 전반부를 보면, 가)는 “다음 사항에 기초하여 조사한 뒤 소화6년도(1931년: 필자 주) 영선(營繕)공사계획서 급히 제출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나)와 다)는 이듬해의 “영선공사계획서 별지 각항에 기초하여 작성한 뒤 6월 30일까지 각 6부 회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전반부는 건축공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제시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후반부는 가)의 경우 전반부에서 말하는 ‘다음 사항’에, 나)와 다)의 경우 ‘별지 각항’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영선’이란 신축·개축·증축·이전과 같은 오늘날의 ‘건축’과 ‘수선’을 포괄하는 일제강점기 용어인데, 기둥이나 보처럼 주요구조부를 해체·보수하는 오늘날 ‘대수선’도 당시에는 ‘수선’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보고예의 영선계획은 엄밀하게 말하면 건축 뿐 아니라 수선도 포함한다.

3.2 보고예의 후반부 구성 및 내용

보고예의 후반부는 세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A) ‘기(記)’, B) ‘제2호 양식(樣式)’, C) ‘사유(事由)’이다. 후반부의 첫째 항목인 기의 내용을 가), 나), 다)에서 살펴보면, 가)의 A)기에는 「조선총독부 회계사무장정」 제25조에 따라 이듬해(1931) 도·부·군·도 세출계획서의 제출기한인 5월 말을 준수하고, 내무국이 관할하는 도·부·군·도 소속 일반경비(경무경비 제외)의 세출계획서는 3통, 영선계획서는 4통을 작성한 뒤 속히 제출하되 ‘좌기’에 따라 작성하라고 했다. 좌기로는 12가지를 나열했다. 나)의 A)기에는 1936년 “영선공사계획서 별지 각항(各項)에 기초하여 작성한 뒤 6월 30일까지 회부”하라고 간략히 언급한 뒤 ‘각항’ 6가지를 나열했다. 다)에서는 각항만 8가지로 늘였을 뿐 나머지는 나)와 같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좌기나 각항에서 주요내용은 1) 영선공사계획서는 신영 및 수선으로 구분할 것, 7) 공사계획이 2건 이상이면 응급순위를 매길 것, 11) 설계 및

실시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가급적 상세히 적을 것이다. 즉, 후반부 첫 번째 항목 A)기는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인 B)제2호 양식의 작성요령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후반부의 B)제2호 양식은 앞선 A)기의 작성요령에 따라 채워야 하는 공사내역표이다. 전반부에서 말하는 ‘영선공사계획서’란 바로 이 표를 말한다(Fig. 3).

Fig. 3. Table form: Construction plan of for what year source: [10]

표 제목은 ‘하년도영선공사계획서’인데, ‘하년도’에는 “소화6년” 등 년도를 적고, 제목 아래 ‘청명(聽名)’에는 ‘경기도청사’처럼 청사 명칭을 적으며, 그 아래로 ‘신영(수선)의 부(新營(修善)ノ部)’라 해서 신영과 수선으로 나누어 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각도는 신축·증축·개축·이전을 모두 신영에 포함시켰으므로, 적어도 1930년대 조선총독부 공문서에서 ‘신영’은 오늘날의 ‘건축’으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B)2호 양식인 ‘하년도영선공사계획서’ 표를 자세히 보면, a) 공사명, b) 구분, c) 구조, d) 동수(棟數)나 간수(間數), e) 원수(員數), f) 단가, g) 금액, h) 응급순위, I) 비교로 구성되어 있다. a)공사명에는 신영의 경우 무슨 청사의 어떤 건축(신축·증축·개축·이축)공사인지 적고, b)구분에는 부지공사·건축공사·시설공사·설비공사로 나누어 세부공사를 적고, c)구조에는 각 세부공사의 구조·층수를 “목조 2층건, 벽돌조적조 단층” 등으로 적도록 했다. d) 동수 또는 간수 난(欄)에는 건물 수를 기입하되, 목조이면 간수(間數)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e)원수는 면적, f)단가는 공사단가, g)금액은 공사비를 적는 난이고, h)응급순위에는 앞서 A)기의 작성요령 7)에 따라 공사의 응급순위를 매기고, i)비교에는 A)기의 작성요령 11)에 따라 특별히 언급할 사항을 적도록 했다.

후반부의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은 C)사유이다. 어떻게 작성하라는 지시는 없고 1, 2, 3으로 번호만 달아두었다.

번호로 구분하여 공사가 필요한 사유를 나열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각도는 보고에 전반부의 작성요령에 따라 후반부의 B)2호 양식 표인 ‘하년도영선공사계획서’와 C)사유를 채워서 A)기의 제출기한에 맞추어 내무국에 매년 보고한 것이다. 이상의 보고예 구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osition of the report format for the construction plan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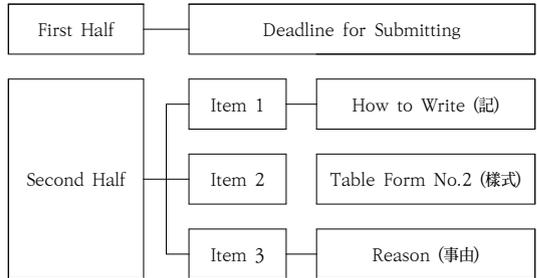


Fig. 4는 평안북도가 1936년 작성한 신영의 부, 즉 1937년 건축공사계획을 정리한 보고예이다. 등급순위가 1개만 매겨 있듯이 단 한 건의 관할 행정관청사 신축만 요구하고 있다.

Fig. 4. Construction plan of Pyeonganbuk-do for the year 1937 source: [12]

4. 결론

이상에서 본 연구가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1930년대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요구를 정

리한 차년도 건축공사계획서에 해당하는 '영선공사계획서'를 이듬해 세출계획서에 포함시켜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보고하면서 그 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되었다. 둘째, 이 건축요구는 회계과장이 내무국장에게 보고예의 전달->내무국장이 각도에 세출계획서를 보고하도록 통첩->각도는 내무국장에게 세출계획서를 보고->내무국장은 세출계획서를 사정하여 재무국장에게 교부하는 4단계로 진행된 행정절차에서 3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세출계획서 제출은 매년 보고인 연보의 일종이었고 조선총독부 회계과가 정한 '보고예'라는 서식을 사용했는데, 각도의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요구는 바로 이 보고예 서식을 사용해서 이루어졌다. 이 보고예 서식은 '신영'과 '수선'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신영에는 오늘날의 건축법상 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선에는 오늘날의 수선 및 대수선을 적게 되어 있었다. 다섯째, 보고예를 사용한 연보로서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차년도 영선공사계획서를 작성·보고한 것은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회계사무장정」의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이 제정된 해는 1914년이므로 이때부터 보고예가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여섯째, 각도의 건축요구에서 핵심은 보고예 서식 후반부 두 번째 항목인 하년도영선공사계획서 표를 채운 내용에 있다. 이 표는 계획단계에서 작성한 공사내역표이지만, 건축물·시설·설비의 면적·단가·예산까지 꽤 상세하게 작성되었다. 일곱 번째, 기존에 그 내용이 연구된 바 있는 1927년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제출한 이듬해 세출계획서[9] 역시, 본 연구가 밝힌 4단계 행정절차 중 3단계에서 각도가 작성하여 내무국에 보고한 것으로, 「회계사무장정」에 근거한 행정행위였고 공사예라는 문서형식을 사용했으며 그 내용은 보고예 구성과 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소급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면 제한상 1930년대 각도의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4단계 행정절차는 각도의 건축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승인되고 건축이 실현되는 전체 과정의 앞부분에 해당한다. 마침내 착공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내용의 기초자료인 공문서는 일목요연하게 철되지 않은 상태라 별도의 자료 발굴이 우선 필요한 실정이다. 모두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 [1] M. Kim, "The Change of the Plans for To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Colonial Choson",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0, No.1, pp.9-17, March 2008. G704-001715.2008.10.1.018
- [2] M. Kim., "The Plan Types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Colonial Choson",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24, No.5, pp.149-158, May 2008. G704-A00167.2008.24.5.010
- [3] M. Kim, "The Style of To and Pu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0, No.2, pp.25-34, June 2008. G704-001715.2008.10.2.017
- [4] M. Kim, "The Floor Spaces and the Plans of To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Reference to the To Administrative Affairs Allotmen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0, No.3, pp.55-62, Sep. 2008. G704-001715.2008.10.3.008
- [5] M. Kim, "Remodeling and Extension of reused Goon (郡) Office Building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992-4998, July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7.4992>
- [6] M. Kim, "Site-Plan Types of Common Design's Goon Office Buildings and their Addition & Remodeling in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7629-7634, Nov.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629>
- [7] M. Kim,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constructed Goon Office Buildings and Influence of their Prototype Scheme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32, No.2, pp.121-131, Feb. 2016. DOI: https://doi.org/10.5659/JAIK_PD.2016.32.2.121
- [8] M. Ki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Polic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around the Goon-Rearrangement in 1914",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7, pp.510-515, July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7.510>
- [9] M. Kim, "Demands for the new Construction of the Goon Office Buildings on the Annual Expenditure Plans for 1928 by To(道)",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Vol.2, No.1, pp.60-71, June 2017.
- [10]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district office budget request*, 1931,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CJA0002793,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50787> (accessed Feb. 26, 2021)

- [11]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tax revenue & expenditure plan*, 1936,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CJA0003231,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51225> (accessed Feb. 26, 2021)
- [12]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Sohwa 12 year tax expenditure plan*, 1937, CJA0003303,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51297> (accessed Feb. 26, 2021)
- [13]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district office budget request, 1938,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CJA0003329,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51323> (accessed March. 26, 2021)
- [14]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tax revenue & expenditure plan by every province*, 1939,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CJA0003471, Available From: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300802830&dsid=000000000004&gubun=search> (accessed Feb. 26, 2021)
- [15]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district office budget request, 1935,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CJA0003139,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51133> (accessed March. 26, 2021)
- [16]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dit., *Document folder of tax expenditure plan by each To*, 1937, National Archives of Korea Management Number CJA0003304, Available From: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GovernmentArchives.do?id=0001551298> (accessed March. 26, 2021)
- [17] Order No. 42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Rule for the accounting affairs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and affiliated offices", *Gazette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Extra, Aug. 17, 1914.
- [18] Order No. 17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Revision of the rule for the accounting affairs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and affiliated offices", *Gazette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No. 469, July 21, 1928.

- [19] Evaluation & describing team in the record information service depart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edit., *Release of the Document of Japanese Imperialism-Documents-Local Administration Part II*, National Archives of Korea, p.1, 2004.
- [20] Order No. 53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Revision of the division of duties of the Choson Government-General", *The Gazette of the Choson Governor-General*, Extra, Nov. 8, 1929.

김 명 선(Myungsun Kim)

[중신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문화재, 건축리모델링